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2. 10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사회·문화적 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『성주군문화예술회관』이 신설되고, 상부로부터 본 회관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신규관리인력이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총 정원 : 510 ⇒ 517명 (증 7명)
- 집행기관 : 500 ⇒ 507명 (증 7명)
- 의 회 : 10 ⇒ 10명 (변동없음)

3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 지

4. 참고자료

○ 성주군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기구인력 보강승인
(행정12200-11640, '02. 10. 2)

○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

성주군조례 제 호

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510"을 "517"로 하며, 동조 제1호중 "500"을 "507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성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1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 : 500명 2. (생 략)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 ----------517-------- --------. 1. ----- : 507- 2. (현행과 같음)